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본 협약은 전기사업법 제 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 제2015-240호)에 따라 시행하는 “관악로 서측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관악구청(구청장 유종필)과 한국전력공사(대표자 사장(직대) 김시호, 대리인 남서울지역본부장)이며,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를 “사업자”라 칭한다.

제 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지중화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 사업구간은 관악로 227에서 성현로 117까지(0.85km)로 하며 동 구간의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 등에 따른 여건 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구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축소된 사업구역 도면포함)로 사업구간을 축소할 수 있다.
2. 사업내용은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전력선 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며, 기존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은 제외 한다.

제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

제 4조 (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범위) 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사업자”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자”가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로복구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자체”가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의 범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의 건설 및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와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인·허가, 권리설정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 5조 (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지자체”는 제4조에 따라 설계한 총 지중화 공사비의 50%를 분담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1. 재질변경(도로포장 재질의 변경 등) 및 도로법시행령이 정한 복구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며,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지자체”와 “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2. “지자체”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시행하는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공사비중 지중배전기기 설치 공간 확보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공사비의 납부) “지자체”는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제 7조 (공사비의 정산) “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비를 확정하여 “지자체”에게 정산서를 교부하며, “지자체”와 “사업자”는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지급)한다. 다만, 이설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로서 이설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설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자체”와 “사업자”가 분담한다.

제 3장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 제공

제 8조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지자체”는 지중배전기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지자체”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2. 지상기기 설치장소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된 장소에 지하매설물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설치장소를 제공한다.
3. 도로 및 보도 등 공공용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도로굴착허가서 및 기기점용허가서(영구점용) 등을 “사업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 9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제외 장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장소는 제외하며, 기타 일반인 및 전기설비(지중배전기기 포함)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가각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2.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3. 침수우려, 설치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 4장 공사 시행

제 10조 (공사의 구분) 본 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사업자”가 “도로복구공사”는 “지자체”가 시행한다.

제 11조 (공사의 착수시기) 본 공사는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합한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공사비가 입금되면 착수한다.

제 12조 (민원처리) “지자체”와 “사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대처한다.

제 13조 (협약의 해약)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자체”가 제 5조 및 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기기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 2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지중화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중화사업이 3개월이상 연기되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 14조 (협약의 해약시 공사비 정산) 제 13조 등 “지자체”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 해약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지자체”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 5조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제 5장 사후관리 및 기타

제 15조 (지상기기 이설 부담) ① “지자체”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제공한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이외로 변경을 요청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② 지중배전기기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민 통행불편,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새로운 이설장소 권원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를 부담하며 새로운 이설장소도 “지자체”가 제공한다.

제 16조 (점용료 감액) “지자체”는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설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점용료를 1/2 감면하고, 감액된 점용료는 향후 30년간 “지자체”와 “사업자”가 제5조의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또는 30년분 도로점용료를 현가환산하여 이설공사비에 포함한다)

※ 단 제4조 및 제16조의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사업비 포함여부, 감액된 점용료의 부담여부 등 양측의 이견 사항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의 관련조항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제 17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 법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가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일

“지자체” 관악구청

대표자 구청장

유 종 팔 (인)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대리인 남서울본부장 김 태 앞 (인)

